

-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214 |
|------------|-----|

2018년 12월 1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- 다. 상정일자
 -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8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
 -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,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

나. 주요내용

-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’를 추가로 신설(안 제3조제9호, 제4조 관련 별표 1)
-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(관련법령)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18.8.2.~8.22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
- 현행 조례는¹⁾ 행정처분 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한해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, 관련 법은²⁾ 신고 또는 고발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절차가 확정된 이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,

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을 수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1)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,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
2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이 개정됨에³⁾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

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위반행위 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질서교란 행위를 근절하며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, 동 개정조례안 별표에서 규정한 포상금은 관련 법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⁴⁾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및 포상금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것임

3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.>

4.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

4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 : 현행 조례는 서울시가 신고를 받은 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

답변 :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대상과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함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1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
- 나.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,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’를 추가로 신설 (안 제3조제9호, 제4조 관련 별표 1)
- 나.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”을 “위반행위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(단,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)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

별표 1의 5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란 다음에 6.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| | | |
|---|---------|--|
| 6.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(제3조제9호) | 200,000 | |
|---|---------|--|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, 관련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함.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,
-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,
- 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수립(신고건수 파악 등)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렵고,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오하나 주무관(02-2133-2339)